



2026년 3월 월간 법령 뉴스레터

제1부: 세금계산서·증빙 관련 법령

1. 시행령 70/2025/NĐ-CP — 세금계산서·증빙 규정 개정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6.01)

수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명확화

시행령 70/2025/NĐ-CP는 기존 시행령 123/2020/NĐ-CP 제9조 제1항·제2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했습니다.

- 재화(국유자산 매각·국가비축재화 판매 포함) 판매의 경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대금 수령 여부와 무관합니다.
- 수출 재화(위탁 가공 수출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세관법에 따라 통관이 완료된 날의 다음 영업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외국 법인·개인 대상 제공 포함,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발행합니다. 대금 수령 여부와 무관합니다.
- 용역 제공 전 또는 도중에 대금을 수령한 경우: 대금 수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단, 아래 용역의 계약 이행 보증을 위한 계약금·선수금 수령 시는 제외됩니다.

아울러 시행령 70/2025/NĐ-CP는 일부 구체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관한 시행령 123/2020/NĐ-CP 제9조 제4항 a, e, l, m, n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했습니다:

- + 대량·경상적으로 발생하며 재화 판매·서비스 제공 기업과 고객·파트너 간 데이터 대조 시간이 필요한 재화 판매·서비스 제공(a호);
- + 원유 탐사·채굴 및 가공 활동(b호);
- + 신용기관의 대출 활동, 외화 환전 대리 활동, 경제조직의 외화 수취·지급 서비스 제공 활동(l호);
- + 법령에 따른 요금 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택시 여객운송 사업(m호);
- + 진료·치료 관리 및 진료비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진료·치료 활동(n호).

(1) 재화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회계, 감사, 재무·세무 컨설팅

감정평가

기술 조사·설계

감리 컨설팅

건설투자 프로젝트 수립

특수 업종별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제9조 제4항 추가 개정):

아래 업종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규정이 신설·개정되었습니다.

대량·반복 거래로 판매자와 고객·파트너 간 데이터 대조가 필요한 재화·용역 판매 (가목)

원유 탐사·채굴·가공 활동 (나목)

신용기관의 대출 업무, 외화 환전 대리업, 외화 수취·지급 서비스 (라목)

미터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택시 여객 운송업 (마목)

진료관리 및 원무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바목)

**2. 시행규칙 06/2026/TT-BTC — 지식재산권 보호가 요청된 수출입 재화에 대한 통관
검사·감시·일시중지 및 위조품·지식재산권 침해 재화 통제에 관한 시행규칙 13/2015/TT-
BTC(시행규칙 13/2020/TT-BTC로 개정)의 일부 개정, 재무부 장관 공포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3.01)**

지식재산권 관련 수출입 재화의 검사·감시 요청 서류

그중 지식재산권 관련 수출입 재화의 검사·감시 요청 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수출입 재화의 검사·감시 요청 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정보 항목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수출입 재화 검사·감시 요청서 또는 시행규칙 13/2015에 첨부된 부록 II 서식 제01호에 따른 원본 1부.
- 산업재산권 보호증서 또는 베트남에서 보호 중인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기타 자료, 또는 산업재산권 대상 사용권 이전 계약 등록증명서; 저작권 등록증명서, 저작인접권 증명서, 식물품종권 증명서 또는 저작권·저작인접권·식물품종권을 증명하는 기타 자료(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부합하게 외국에서 발급된 증명서 포함); 사본 1부;
- 보호증서·증명서가 관할기관의 통지에 따라 전자정보사이트에서 전자 형태로 발급된 경우, 요청서 제출인은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세관 당국이 검사·대조할 수 있도록 검사·감시 요청서에 보호증서·증명서 정보를 전자정보사이트와 함께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청하는 재화의 실물 사진; 지식재산권 침해 재화의 사진·상세 설명, 진품과 위조품·지식재산권 침해 재화의 구별 특징(있는 경우).

- 검사·감시가 요청된 재화를 합법적으로 수출입하는 조직·개인의 명단; 지식재산권 침해 재화를 수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조직·개인의 명단.
- 위임장(위임하여 제출하는 경우): 사본 1부.

시행규칙 06/2026/TT-BTC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규칙 20/2026/TT-BTC —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320/2025/ND-CP의 시행 지침, 재무부 장관 공포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2026년 3월 12일부터 일부 경우의 법인세 과세 매출 확정 시점에 관한 규정

(i)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의 일부 경우에 대한 법인세 과세 매출 확정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재화의 경우, 법인세 과세 매출 확정 시점은 재화 수출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입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 과세 매출 확정 시점은 세관 법령상 수출 재화 확정 근거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 항공운송 활동의 경우, 법인세 과세 매출 확정 시점은 구매자에 대한 운송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 건설·설치 활동(조선 포함)의 경우, 법인세 과세 매출 확정 시점은 대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공사, 공사 항목, 건설·설치 물량의 검수 시점입니다;
- 전기·수도 공급 활동의 경우, 법인세 과세 매출 확정 시점은 전기·수도 요금 계산서에 기재된 전기·수도 계량기 지수 확인일입니다.

(ii) 외국 기업의 일부 경우에 대한 법인세 과세 매출 확정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자본) 양도 활동의 경우, 법인세 과세 매출 확정 시점은 규정에 따라 최초 지분양도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 증권·예금증서 양도의 경우, 법인세 과세 매출 확정 시점은 양도 시점입니다;
- 선물계약인 파생증권 양도의 경우, 법인세 과세 매출 확정 시점은 증권거래소 거래 시스템에서 투자자의 선물계약 매매 주문이 체결되는 시점 또는 선물계약 만기 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20/2026/TT-BTC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 시행규칙 04/2026/TT-BCT — 원료 담배 수입 관세할당량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 장관 공포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3.15)

2026년도 원료 담배 수입 관세할당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04/2026/TT-BCT에 따른 2026년도 원료 담배 수입 관세할당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i) 2026년도 원료 담배 수입 관세할당량 물량

2026년도 원료 담배(HS 코드 2401) 수입 관세할당량 물량은 79,199톤입니다.

(ii) 2026년도 원료 담배 수입 관세할당량 배분 대상

2026년도 원료 담배 수입 관세할당량은 관할기관이 발급한 담배제품 생산허가증 또는 원료 담배 가공허가증을 보유하고, 국내 소비용 궐련 생산 또는 그 생산을 위한 원료 가공을 위해 관세할당량에 따른 수입 원료 담배 사용 수요가 있는 상인에게 배분됩니다.

(iii) 2026년도 원료 담배 수입 관세할당량 배분 방식

시행규칙 04/2026/TT-BCT 제2조에 규정된 대상은 대외무역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세부 규정한 시행령 69/2018/NĐ-CP 및 시행규칙 12/2018/TT-BCT의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서 발급 방식으로 산업통상부로부터 2026년도 원료 담배 수입 관세할당량을 배분받습니다.

시행규칙 04/2026/TT-BCT에서 인용된 법규범 문서가 개정·보완 또는 대체되는 경우, 그 적용·시행은 해당 개정·보완 문서 또는 대체 문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iv) 2026년도 원료 담배 수입 관세할당량 배분 시점

2026년도 원료 담배 수입 관세할당량 배분 시점은 시행규칙 04/2026/TT-BCT의 시행일부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04/2026/TT-BC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6년 3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제3부: 기업·투자 관련 법령 정책

1. 2025년 투자법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6.03.01)

첫째, 2025년 투자법은 조건부 투자·사업 업종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투자법에 첨부된 부록 IV의 조건부 투자·사업 업종 목록은 종전 규정 대비 재검토·축소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법은 ‘사전 검사’에서 ‘사후 검사’ 체제로의 전환을 지향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에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합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 보유 이전에 경제조직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투자법 제22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등록증(IRC) 발급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고도 경제조직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설립은 본 법 제9조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 접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본 법은 투자 방침 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투자 방침 승인 대상 프로젝트는 2025년 투자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국회, 총리, 성급 인민위원회의 권한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히 대규모, 대면적 토지 사용 또는 환경·국방·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자가 법적 의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본 법은 투자 프로젝트 조정이 필요한 일부 경우를 폐지했습니다. 2025년 투자법 제41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시행 과정의 일부 변경 사항은 종전과 달리 투자등록증 조정 절차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행정절차를 대폭 줄이고 프로젝트 시행 과정에서 기업의 유연성을 높여 줍니다.

다섯째, 특별 투자절차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투자법 제36a조(신설) 규정은 더 많은 유형의 프로젝트, 특히 첨단기술·혁신 분야에 특별 투자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절차는 서류 간소화 및 처리 기간 단축 방향으로 설계되어 투자 유치 역량을 제고합니다.

여섯째, 투자 프로젝트 활동기간의 유연한 조정이 허용됩니다. 2025년 투자법 제44조에 따라, 프로젝트 활동기간은 일부 경우에 조정이 검토될 수 있으나 50년, 경제구역 내 프로젝트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7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자가 장기 전략 수립에서 더 주도적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합니다.

일곱째, 해외투자 방침 승인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 투자법 제V장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본 법은 많은 경우에 대해 해외투자 방침 승인 요구를 삭제했습니다. 투자자는 규정에 따라 해외투자등록증 발급 절차만 수행하면 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여덟째, 투자 분야의 투명성 강화 및 행정절차 개혁이 추진됩니다. 2025년 투자법 전반에 걸쳐 절차 간소화, 규정 투명화 및 투자자의 경영 자유권 제고가 지향됩니다. 동시에 국가 관리 체제가 사후 검사로 강력히 전환되어 관리 효율을 보장하면서도 더 개방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합니다.

제4부: 기타 법령 정책

1. 시행규칙 59/2025/TT-NHNN — 국가은행 전용 전자서명 및 전용 전자서명 인증서의 제공·사용에 관한 규정, 베트남 국가은행 총재 공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3.01)

시행규칙 59/2025/TT-NHNN 제12조는 국가은행 전용 전자서명 인증서의 복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복구를 요청하는 전자서명 인증서는 일시중지 기간 중이어야 합니다.

(2) 가입자의 전자서명 인증서 복구 사유

- 가입자 관리 조직이 시행규칙 59/2025/TT-NHNN 제11조 제1항 a호에 따라 일시중지를 요청했던 전자서명 인증서의 복구 요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소송 진행 기관,公安 기관 또는 과학기술부가 시행규칙 59/2025/TT-NHNN 제11조 제1항 b호에 따라 일시중지를 요청했던 전자서명 인증서의 복구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 시행규칙 59/2025/TT-NHNN 제11조 제1항 c호에 따라 일시중지된 전자서명 인증서로서 해당 오류·사고가 복구된 경우;

- 일시중지 요청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서 일시중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가입자 관리 조직은 본 조 제2항 a호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서 복구 요청 서류 1부(시행규칙 59/2025/TT-NHNN에 첨부된 부록 V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서 복구 요청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4) 처리 기한 및 시행 결과

- 시행규칙 59/2025/TT-NHNN 제12조 제2항 a호에 따른 유효한 복구 요청 서류 또는 제12조 제2항 b호에 따른 요청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1일 이내에, 정보기술국은 가입자의 전자서명 인증서를 복구합니다.

서류 접수일부터 근무일 1일 이내에, 서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정보기술국은 서류 처리를 거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회신 정보 및 처리 결과는 시행규칙 59/2025/TT-NHNN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 시행규칙 59/2025/TT-NHNN 제12조 제2항 c, d호의 규정에 대해서는, 정보기술국이 전자서명 인증서를 자동으로 복구하고 가입자 관리 조직에 통보합니다.

시행규칙 59/2025/TT-NHNN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유의사항:

본 뉴스레터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기업 또는 개인께서는 법령 전문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절차 및 서식을 정확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